

1997. 12

제71회 정기회

공유재산 관리계획(취득)의결안

검 토 보 고

사회도시위원회

(전문위원 박홍표)

공유재산관리계획(취득)의결안

검 토 보 고

▶ 본 조례안은 1997년 11월 5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■ 제안사유

-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(세출)에 의거 공영 노외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불법주·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
-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확충에 기여

■ 주요골자

- 공영 노외주차장 부지 매입
- 교통체증이 극심한 상가 또는 업무지구 1~2개소에 1,653㎡(500평)의 부지 선정 매입
 - 양동상가 인근지역이나 염주상가 인근 또는 상무신도심 업무지구 등을 고려
 - 주민 여론 및 실무진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치를 선정할 것임.
- 설치후 직영 또는 위탁관리 등 방안을 검토
- 취득방법
 - 대상지를 선정하여 매수협약을 거친 후 2개 감정평가원에 감정평가를 의뢰, 산술평균가액에 의거 매입

※ 공영노외주차장 부지 취득재산 대상내역

(단위 : m², 천원)

명 칭	소재지	면 적	소요예산	취득시기	비 고
공 영 노 외 주차장	서 구 관 내	1,652 (500평)	2,148,135	'98년도	매입당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개소수(1~2개소)결정

▣ 참고자료

- 지방자치법 제35조(지방의회 의결사항)
- 지방재정법 제77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
-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(세출)

▣ 검토의견

- 산업화는 도시로의 인구집중을 가져와 전국적으로 도시화를 촉진시켰으며, 복잡한 현대 도시생활에 있어 자동차는 그 기동성과 수송의 편리함으로 인해 오늘날 거의 생활필수품화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. 그러나 인위적·의식적인 계획에 의해서가 아닌 오랜 역사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온 우리나라 도시의 물리적 공간의 실상은 넘쳐나는 자동차의 홍수에 몸살을 앓게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.
-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의 현실은 불법 주·정차량을 양산하여 운전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 및 인근 주민들에게 사고의 위험, 시간의 손실 등 여러 가지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여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정신적·물질적 기회비용을 증대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.

○ 이렇게 볼 때, 공영 노외주차장의 건설은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며 그를 위한 부지 매입은 상당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. 따라서 이번 의결안은 긍정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첨언하고자 합니다.

첫째, 1,652m² 즉, 500평을 목표로 하게 된 그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이 있으면 합니다.

둘째, 주차장의 확보는 교통문제 해결의 필요조건일 뿐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. 불법주·정차량의 더욱 철저한 단속과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 노력이 아울러 병행되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봅니다.

셋째, 주차장부지 선정에 있어서는 주차장 건설이 오히려 차량의 집중을 유발하여 인근의 교통체증이 더 극심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.

마지막으로, 이번의 사업은 어떠한 기준보다도 비용·편익분석 등을 통한 철저한 경제적 합리성에 입각하여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